

# 도시가스 공급 규정

## 사용계약 및 공사, 검사

“  
 최근 “난방 시공업”과 관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99년 1월1일자로 전문이 개정된  
 내용을 회원들이 알기쉽게 연재코자한다.  
 ”

###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구 분	2등급	3등급	5등급	7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표준소비량(m <sup>3</sup> /H)	2	3	5	7	10	16	25	40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m<sup>3</sup>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1) 주택용 수요가

· 취사 전용 수요가 : 2m<sup>3</sup>/H

· 취사, 난방 겸용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2) 주택용외의 수요가

보일러 등 사용시설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다만, 보일러가 시간당 증기발생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의 표준가스소비량은 1톤의 열량을 63만kcal/m<sup>3</sup>로 하고 도시가스열량은 제31조에 규정한 표준열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시 설 분 담 금

1) 시설분담금은 수요가의 총 표준가스소비량(m<sup>3</sup>/H)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유량 등급(40m<sup>3</sup>/H 이하 사용 수요가는 계량기 등급) 별로 차등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 2등급 : 42,300원

· 가스계량기 3등급 : 68,900원

· 3등급 초과시 초과등급당 : 42,300원

· 41~60m<sup>3</sup>/H 시간유량(m<sup>3</sup>)당 : 15,200원

· 61~600m<sup>3</sup>/H 시간유량(m<sup>3</sup>)당 : 16,900원

· 601~1,800m<sup>3</sup>/H 시간유량(m<sup>3</sup>)당 : 18,600원

· 1,801~3,000m<sup>3</sup>/H 시간유량(m<sup>3</sup>)당 : 21,100

다만, 열병합용등 시간당 3,001m<sup>3</sup>이상 사용하는 대량 수요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가스계량기의 개조시는 표준가스소비량 단위시간 유량차에 따라 차액분담

3) 부가가치세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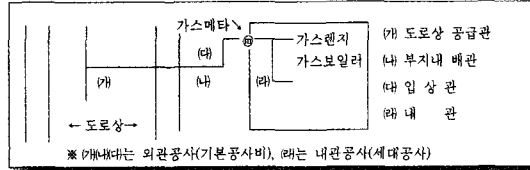
\* '97. 8. 1 현재 총투자비 대비 시설분담금 비율 30%를 25%까지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1%씩 인하 조정

## 시설분담금

구분	1개월 기본요금		초과 사용 요금		비고
	기본량	요금	사용량	㎡당단가	
가정용	취사용 난방용	6㎡	2,477.82	12㎡까지 412.97	○ 부가가치세 별도 - 주택취사용 기본요금 : 6㎡ - 주택용중 12㎡까지 취사, 12㎡초과 난방 적용
			354.71	12㎡초과	
	중앙난방	㎡	354.71		
영업업무용	업무용난방	㎡	365.58		
	열반용	영업 1	㎡	361.40	
		영업 2	㎡	317.78	
냉방용	㎡	202.21			
산업용	㎡	260.94			
열병합및집단에너지용	지역난방	동절기	㎡	292.15	
		하절기	㎡	230.20	
		기타월	㎡	259.57	
	기타	동절기	㎡	313.48	
		하절기	㎡	251.53	
		기타월	㎡	280.90	

## 도시가스사용시설 표준공사비

### 1. 공사개요도



### 2. 공사비 구조

기본공사비 + 세대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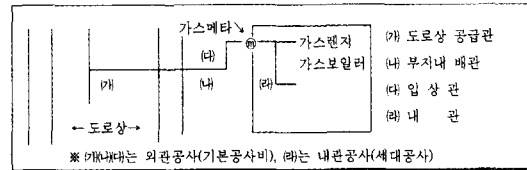
### 3. 세부내역

표준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폐기물 처리비, 시설분담금 등 제경비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기본공사비 ————— 663,000원 (예시)  
(단위 : 원)

주택 형태	평형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
단독	602	618	634	650	666
다세대	588	601	614	627	640
연립	580	593	606	619	632

○ 세대공사비 ————— 580 ~ 666천원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단위 : 원/㎡)

계량기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7등급	10등급	16등급
금액	140	170	340	500	770	1,290

계량기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초과
금액	1,760	2,87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계상

▶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단위 : 원)

계량기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7등급	10등급	16등급
금액	140	170	340	500	770	1,290

계량기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초과
금액	1,760	2,870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계상

▶ 세대공사비는 계량기 3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계량기 등급이 3등급을 초과할 경우 시설분담금 및 가격 차액 추가 부담

○ 할인을 적용 — 세대공사비에만 적용

세대주	1세대	4세대까지	7세대까지	10세대까지	11세대이상
할인율	0	3%	5%	7%	9%

4. 공사조건에 따른 공사비 산출

○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대지경계까지 이르는 공급관은 도로쪽에 관계없이 실거리로 공사비 산출

○ 대지경계에서 입상관까지 이르는 부지내의 배관은 실거리로 공사비 산출

○ 공급관 및 인입관 공사비는 배관의 재질과 포장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주택의 평형은 층별 전체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 10평 : 15평 미만
- 20평 : 15평 이상 25평 미만
- 30평 : 25평 이상 35평 미만
- 40평 : 35평 이상 45평 미만
- 50평 : 45평 이상

4. 공사조건에 따른 공사비 산출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도로상 공급관 설치	1m당	120,000	1m를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PLP32A - CON		110,000			
- PE32A - CON		119,500			
- PE32A - ASP		107,000			
- PLP50A - CON		121,000			
- PLP50A - ASP		111,500			
- PE50A - CON		121,000			
- PE50A - ASP		109,000			
부지내 공급관 설치		1m당		38,500	1m를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PLP32A - CON				20,000	
- PLP32A - 토사	31,500				
- PE32A - CON	17,000				
- PE32A - 토사	17,000				
- PLP50A - CON	35,500				
- PLP50A - 토사	21,000				
- PE50A - CON	33,000				
- PE50A - 토사	19,000				

구분	단위	단가(원)	비고
입상관 설치	개소	164,000	공통적용
- 32A		220,000	
- 50A			
충증가할증	층	6,000	공통적용
기기 추가사용을 위한 배관설치	건	88,000	5m이내
시공감리비	건	203,000	시공감리 대상에 한함
2m까지			
2m초과시	m	1,770	
취사전용 수요가에 대한 세대공사비 감액	세대	124,000	보일러비설치에 따른 공사비 감액

도시가스 사용시설 수탁공사 지침

1. 정의

수탁공사와 합은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설계, 공사비산출, 공사시행, 공사감독 및 안전검사 등을 관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책임하에 공사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친절봉사와 공사의 범위

(1)수탁공사를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완벽한 시공으로 도시가스의 안전공급에 기여하고

(2)시민에 대한 친절봉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3. 적용대상 및 공사의 범위

(1)적용대상은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 권역내의 주택용 가스 시설의 신설, 개조 및 보수공사로 한다.

(2)공사범위는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연소기 입구에 있는 중간 밸브까지의 계량기를 포함한 배관공사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밸브에서 연소기에 이르는 연결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4. 공사신청, 계약, 공사시행 및 공사비납입

(1)공사의 신청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접수는 관할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회사)만이 할 수 있다.

(2)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신청 접수시 현장을 조사하여 공사가능여부, 대략적인 공사비, 공사 절차, 공급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고필증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사불가시에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첨 양식 #1참조)

(3)수탁공사 계약 당사자는 관할 도시가스사업자(대표자)와 수요자(가옥주)로 하고 시공업자등 제3자의 개입을 일체 배제한다.

가. 수탁공사의 계약단위는 개개의 주택별로 한다. 이에 따른 수탁공사 계약서, 세부내역 및 계약조항은 별첨과 같다.

(4)수탁공사의 산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표준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특수할 경우 계약 담당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공사비를 산출, 계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준공사비가 제시한 산출내역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표준공사비의 세부내역은 인입배관 공사비, 연결공사비 및 입상관공사비, 세대공사비(내관), 시설분담금, 수탁관리비로 하고 수요자의 요청에 의거 연소기 연결비도 포함할 수 있다.

(5)수탁공사비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용자 받은 경우에는 설치공사비중 중도금 및 잔금을 용자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중도금과 잔금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6)도시가스사업자는 준공예정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나, 부득이 위 기간내에 가스공급이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와 가스공급 예정일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간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5. 수탁공사에 대한 시공업체 선정, 도급계약 등

(1)도시가스사업자에게 등록된 시공자나, 도시가스사업자 직영으로 수탁공사를 시행한다.

(2)수탁공사에 대한 시공자 선정기준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을 감안, 도시가스사업자가 공평하게 정한다.

(3)도시가스사업자는 수탁공사를 위하여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가.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공사의 이행, 하자보증 및 공사대금의 지급등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제반규정에 맞게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사대금의 결정 및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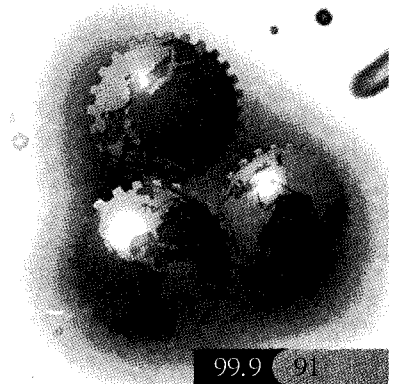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를 배정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받은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배정과 관련하여 자재구입 등 시공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수요자에게서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사진척을 감안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선금금의 경우 회사는 시공자에게 채무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6. 도시가스사업자는 본 도시가스 사용가시설 수탁공사 지침을 근거로 하여 내



부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 양식 1-가 )

### 신고필증

(수요가 보관용)

1. 귀하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신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공급예정일과 예상공사비를 제시하오니 공사계약시에는 본 신고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예정일	예상공사비

※ 예상공사비는 계약시에 증감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공사비 산출 기준내역 별첨참조

2.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부설시공방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본 도시가스회사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아울러 신청인께서 본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업체를 선정 가정관(배관)공사를 시행할 시는 전반적인 안전이상유무, 부설시공여부, 도시가스의 안전공급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구 동 번지 호(연립 동 호)

(신청인 성명)

× × 도시가스 주식회사 신고필 확인(인)

담당자

문의처

### 도시가스 사용시설 수탁공사 계약조항

제1조(총 칙)

1) 갑(수요자)은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 공사비산출, 공사시행, 공사감독, 안전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을(도시가스회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한다.

2) “을”은 “갑”이 위탁한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를 수탁함에 있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3) 갑(수요자)과 을(도시가스회사)은 도시가스사용시설 수탁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소유권의 귀속)

시설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을”에게 귀속한다.

제3조(대금의 납부)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공사비 30%를 계약금으로, 공사착공시에 60%를 중도금으로, 공사준공후 가스공급전에 10%를 잔금으로 “을”에게 납부한다.

제4조(의 무)

1) “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된 설비를 관리 보존하여야 하며, “갑”의 부주의로 도난, 파손등의 사유 발생시는 “갑”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을”은 “갑”의 주소로 고지서를 발부하며 “갑”은 주소변경 즉시 “을”에 주소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을”은 가스공급예정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이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와 가스공급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은 공사준공일로부터 2년간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공사준공일을 최초 가스공급일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

“갑”과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및 일방적인 해약요구가 있을 경우
- 2) 공사진행중에 상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기납부한 공사비의 반납을 청구할 수 없다.
- 3) 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공인기관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시는 “을”은 지체없이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이 불가할 시는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기납부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 각 한통씩 계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소지한다.

**도시가스 시설공사 공사금액 내역서**

(단위 : 원)

**1. 공급배관 (주소: 구 동 번지 호) 작성일:**

구분	도로종류	재질	관경(A)	연장(m)	단가(원)	금액	산출기준
도로상 공급관		PE, PLP	32A, 50A				실측에 의한
부지내 배관							m당 단가를 적용함
소				계		원	

**2. 연결비 및 입상관**

구분	종류	재질	관경(A)	단가(원)	금액	산출기준
연결 및 입상관 공사비	신설, 기존	PE, PLP	32A, 50A			
소				계		원

**3. 세대공사비**

(주택의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중 선택)

평형/구분	1)표준공사비	2)세대수	3)할인율(%)	4)총증가할증	금액	산출내역
( )평형						1)×2)×3)+4)
소				계		원

**4. 수탁관리비**

구분	단가(단가)	세대수	금액	산출내역
*기본세대	20,000원			
*추가세대 마다	10,000원			
소		계	원	

**5. 연결비용**

구분	단가(단가)	세대수	금액	산출내역
*가스보일러	25,000원/대			
*가스렌지	13,000원/대			
*노출연경	6,000원/대			
소		계	원	

**6. 기타**

구분	단가(단가)	세대수	금액	산출내역
시설분담금	46,530원/동급			
계				
가스기구 추가설치	88,000원/동급			
시공관리비	203,000원/2m+1,770원/m×(-2m)			공동주택만 적용하며 추가비용은 1,770원/m
소		계	원	

**7. 총 계 (부가세포함) 총계:(1+2+3+4+5+6) 원**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현황**

구분	계	강서권	강남권	동부권	북부권	구로권
회사명 (대표자)	5개사	서울 (배경운)	대한 (김명만)	극동 (이영실)	한진 (김대영)	강남 (최대업)
자본금		350억	370억	300억	(사업부)	108억
위치		강서구 염창동 281	강남구 대치동 27-1	상동구 용답동 249-8	노원구 상계동 711	구로구 고척동 66-2
공급년월		'72.11.24 '83.3.30 민영화	'80.2.15	'83.3.20	'85.12.30	'85.12.30
공급가구	2,455원	945천	491천	478천	322천	219천
배관(km)	9,054	2,688	2,358	1,877	1,291	840
정압기 (개소)	730	218	121	210	121	60
공급대상지	25개구 530개동	11개구 193동 종로 2 용산 13 은평 20 서대문 19 마포 24 양천 13 강서 23 영등포 22 동작 20 관악 27 서초 10	4개구 87개동 서초 12 송파 28 강남 26 강동 21	9개구 150개동 종로 19 중구 18 용산 10 성동 20 광진 16 동대문 26 종로 20 성북 18 서대문 3	4개구 70개동 성북 13 도봉 15 강북 18 노원 24	3개구 40개동 양천 9 구로 19 천 12
회사 직원수	1,444명	495명	384명	301명	175명	89명
지역관리소 (직원수)	152개소 (1,937명)	51개소 (894명)	53개소 (378개소)	16개소 (308명)	18개소 (170명)	12개소 (187명)

